

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

급여기준

- **급여대상** 만 65세이상 부분무치악 환자(완전무치악 제외)
- **적용개수** 상, 하악 구분없이 1인당 평생 2개

본인부담률 변경내용

▶ **시행시기** 2018년 7월 1일(예정)

변경
전

50%

희귀난치성 질환자(C) 20%
만성질환자 등(E, F) 30%

변경
후

30%

희귀난치성 질환자(C) 10%
만성질환자 등(E, F) 20%

❑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, 치과 병·의원의 등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.

관련정보 확인
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사이버민원센터 → 건강보험 안내 → 보험급여
- 등록관련
1577-1000 국민건강보험공단
- 진료비 청구관련
1644-2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